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기업공개(Initial Public Offering, IPO)¹⁾ 시 발행인 등이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‘사전수요예측제도’의 법적근거를 마련함(안 제119조의3).
- 기업공개 시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(保護預受)²⁾를 조건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할 수 있는 ‘코너스톤 투자자(Cornerstone Investor) 제도’를 도입함(안 제119조의4).

II. 검토의견

□ 「상법」 과의 충돌 소지 해소 등을 위한 조문정비(안 제119조의4)

-
- 1)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(금융투자협회 규정)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3. “기업공개”란 법 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이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 및 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, 코넥스시장 중 해당 법인이 상장되지 않은 다른 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모를 말한다.
- 2) 일정 기간 동안 주식 등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함.

안 제119조의4는 기업공개(IPO) 시 발행인 등이 증권신고서의 제출 전에 특정 전문투자자에게 공모주의 일부를 미리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.

다만, 개정안은 “발행인, 인수인 및 주선인”이 전문투자자에게 공모주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고, 이 경우에는 “제121조제1항³⁾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는바,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.

첫째, 개정안에 따르면 발행인뿐만 아니라 ‘인수인’⁴⁾ 등도 공모주에 대한 청약 승낙의 주체로서, 발행인으로부터 공모주를 인수하는 인수인이 사전에 그 권리를 전문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.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(이른바 “권리주”)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「상법」 제319조⁵⁾와 충돌할 우려가 있음.

둘째, 개정안은 “발행인, 인수인 및 주선인”이 청약의 권유를 할 수 있고, 이 경우 제1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

3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21조(거래의 제한) ① 제120조에 따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그 증권의 발행인·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4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(그 밖의 용어의 정의) ⑪ 이 법에서 “인수”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·사모·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.

1.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
2.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

⑫ 이 법에서 “인수인”이란 증권을 모집·사모·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.

5) 「상법」 제319조(권리주의 양도)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

제121조제1항은 “발행인·매출인과 그 대리인”이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증권에 대하여 청약이 있는 경우 이를 승낙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서 문언상 ‘인수인 및 주선인’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, 그 ‘주체’의 범위가 달라 조문 간 정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.

셋째, 개정안은 공모주의 사전배정을 위하여 발행인 등이 청약을 ‘권유’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명시하고, 그 청약의 권유에 따른 전문투자자의 사전 청약을 발행인 등이 ‘승낙’할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, 증권신고 효력 발생 전 청약 승낙의 근거 등이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.

따라서 안 제119조의4에 별도의 항을 신설하여, 증권신고 효력 발생 전에 “발행인과 그 대리인”이 전문투자자의 사전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, 「상법」과의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, 청약 승낙의 근거 및 주체 등을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.

[수정의견]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19조의4(주권의 사전 청약) ① 발행인, 인수인 및 주선인은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<u>주권(주권과 관련된 증권의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</u> 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<u>그 주권의 수량 중</u>	제119조의4(주권의 사전 청약) ① ----- ----- <u>주권의</u> ----- ----- <u>자산규모</u> -

일부에 대하여 <u>자산규모</u>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<u>청약을</u> 권유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제119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을</u>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 설> ② (생 략) ③ <u>제1항에</u> 따라 주권을 취득한 자는 주권의 취득 후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취득한 주권을 보호예수하여야 한다. ④ 제1항에 <u>따른</u> <u>청약을</u> 권유할 수 있는 주권의 수량의 상한(각 전문투자자별 수량의 상한을 포함한다), <u>제2항에</u> 따른 이해상충의 방지 체계의 기준, <u>제3항에</u> 따른 주권의 보호예수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----- ----- <u>그 주권의 수량 중</u> <u>일부에 대한 청약</u> -----. ----- <u>제119조제1항을</u> ----- -----. ② <u>제1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인과 그 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</u> <u>청약을 권유받은 전문투자자의 청약을 승낙할 수 있다.</u> ③ (개정안 제2항과 같음) ④ <u>제2항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⑤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<u>제3항에</u> ----- ----- <u>제4항에</u> ----- -----.
---	---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